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46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: 2020년 4월 22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1411호)과 문장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1420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장이 폐기물처리사업의 수행주체인 청소인력의 후생복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, 거리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이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시장은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
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4항 신설)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”을“(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